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의용소방대원 정년 연장〉

■ 정점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146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기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점식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12. 03.
3. 회 부 일 : 2024. 12. 0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 소방기술 관련 자격·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의사·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중에서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도록 하며,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은 65세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고령화로 인해 고령인구 비율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농어촌지역은 의용소방대원의 모집과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통계청에 따르면 농어촌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6.8%에 달함(2021년 기준).

이에 인구 수 및 고령인구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70세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 단서 신설).

Ⅲ. 검토의견

1. 의용소방대원 정년 연장

개정안은 인구 수 및 고령인구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70세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정년)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단서 신설>	제5조(정년) ----- ----- . 다만, 인구 수 및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70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제2조제1항),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

람, 소방기술 관련 자격·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의사·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도록 하며(제3조),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로 정하고 있음(제5조).

또한, 의용소방대의 임무로서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및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제7조)¹⁾²⁾.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읍 또는 면에 둔다.

③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을 따로 정하여 그 지역에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를 화재진압 등을 전담하는 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용소방대"라 한다)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구역의 특성과 관할 면적 또는 출동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한다.

1. 관할 구역 내에서 안정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2.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
3.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 관련 자격·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사·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
6. 기타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재능을 보유한 사람

제5조(정년)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제7조(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의용소방대 제도 개요는 [참고] 참조

<의용소방대 제도 개요>

○ 근 거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입 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하는 경우, 의용소방대원은 소집명령에 따라 화재, 구조·구급 등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소방업무 보조

○ 전국 의용소방대 규모: 전국 18개 시·도 3,968개대 94,717명
(2024.1.1. 기준)

구 분	계	남성 의용소방대	여성 의용소방대	혼성 의용소방대	지역 ³⁾ ·전문 ⁴⁾ ·전담 ⁵⁾
대수(대)	3,968	1,417	1,305	142	1,104
현원(명)	94,717	36,501	31,249	3,733	23,234

○ 2023년도 활동성과 : 256,743회 1,213,627명 활약

구분	총계	화재		구조·구급	예방활동 (훈련·홍보·순찰·경계근무 등)			
		화재 진압 보조	재난 활동 보조	활동 보조	화재 예방	행사 안전 지원	생활 안전 지원	홍보 및 기타
횟수 (회)	256,743	6,911	1,981	5,747	86,555	20,117	65,405	70,027
인원 (명)	1,213,627	63,962	8,197	19,901	407,312	86,746	262,162	365,347

3) 의용소방대의 하위 조직으로 동네별로 있는 119안전센터와 같은 개념임.

4)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지역특수성 고려하여 전문기술·자격자로 구성·설치된 의용소방대의 한 종류임

※ 중장비 전문의용소방대, 산악 전문의용소방대, 수난 전문의용소방대 등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 남성만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 여성만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 또는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고령화로 인해 고령 인구 비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고 (2015년 12.8% → 2024년 11월 19.9%→ 2029년(추정) 24.4%), 의용소방대가 주로 활동하는 농어촌지역의 고령인구 비율은 우리나라 전체의 3배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⁶⁾. 한편, 전국 의용소방대원의 경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61세이상 대원의 비율이 7.4%에서 1.4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의용소방대원 중 상대적으로 청년 및 중장년층의 비율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음.

또한, 기대수명 증가와 의료기술의 발달로 노동 가능 연령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의용소방대원으로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65세가 넘으면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시대 환경에 맞지 않는 바 이제는 농어촌 지역 현실에 맞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⁷⁾.

②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지역특수성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전문기술·자격자 등으로 구성하는 전문의용소방대(이하 “전문의용소방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용소방대”라 한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5) 전담의용소방대는 농·어촌 지역이나 도서지역 등 정규 소방력이 부족한 지역에서 긴급하거나 통신두절 등 특별한 경우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소집 명령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화재진압을 수행할 수 있음.

6) 2023년도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농가 52.6%, 임가 52.8%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 고령 인구 비율이 18%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농촌 지역의 고령인구 비율이 전체의 3배 수준으로 나타남(출처: 통계청, 2023년 농림어업조사).

7) 자료: 정점식 의원 보도자료, 의용소방대원 정년, 65세에서 70세로 연장 추진, 2024. 12. 3.

(출처: <https://blog.naver.com/PostList.nhn?blogId=jsjeong0403&from=postList&categoryNo=17>)

<65세이상 인구 구성비 현황(2015~2024년)>

(단위: 명, %)

총인구	2015	2016	2017	2018	2019
65세 이상	6,541,168	6,757,083	7,066,060	7,366,085	7,688,994
구성비(%)	12.8	13.2	13.8	14.3	14.9
총인구	2020	2021	2022	2023	2024.11월
65세 이상	8,151,867	8,571,347	9,018,412	9,499,933	10,199,204
구성비(%)	15.7	16.6	17.5	18.4	19.9

(자료: 소방청)

<65세이상 인구 구성비 현황(2025~2029년까지 예상치)>

(단위: 명, %)

총인구	2025	2026	2027	2028	2029
65세 이상	10,514,000	11,125,000	11,597,000	12,125,000	12,521,000
구성비(%)	20.3	21.6	22.5	23.6	24.4

(자료: 소방청)

<의용소방대원 중 61세 이상 대원 통계>

(단위: 명, %)

구분	총인원	61세이상 인원	구성비(%)
2020	96,561	7,114	7.4
2021	95,645	8,785	9.2
2022	95,208	10,243	10.8
2023	94,717	10,831	11.4

(자료: 소방청)

개정안은 인구 수 및 고령인구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70세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61세 미만 의용소방대원이 줄어들고 고령 인구 비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상황에서 의용소방대원 충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노령 인구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연장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임.

다만, 의용소방대원의 정년 연장 여부는 의용소방대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필요성, 각 지방자치단체 별 지리적 특성 및 인구 구조, 소방관서 간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을 입법하는 경우, 정년 연장 요건에 대한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정년 연장 요건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현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대통령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측면도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문 의 처
02)6788-5351